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〕

● 계약대상

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(보호자)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
● 계약기간

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,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● 계약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.

●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

1.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

① 수급자의 안전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
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③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④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준수

2. 신원인수인의 의무

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
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
3. 신원인수인의 권리

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
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③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●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

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.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. (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.)

1.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%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%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. (경감대상자는 6%, 9%, 기초생활수급자는 0%부담한다.)
2.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, 수급자(보호자)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3. 월 이용 한도액 및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.

< 2023년 장기요양 수가 >

월 한도액	방문요양 급여비용
	30분 이상 - 16,190
1등급 - 1,885,000	60분 이상 - 23,480
2등급 - 1,690,000	90분 이상 - 31,650
3등급 - 1,417,200	120분 이상 - 40,280
4등급 - 1,306,200	150분 이상 - 46,970
5등급 - 1,121,100	180분 이상 - 52,880
6등급 - 624,600	210분 이상 - 58,930
	240분 이상 - 65,000